

수원지방법원 2022. 1. 27 선고 2021나5297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1. 27 선고 2021나52976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0. 12. 23 선고 2019가단574823 판결

## 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

담당변호사 심송옥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

담당변호사 서병준

변론종결 2021. 12. 23.

판결선고 2022. 1. 27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. 12. 23. 선고 2019가단574823 판결

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11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/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. 11. 20. 접수 제1907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(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 증인 O의 증언 등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)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이국현, 판사 김광진, 판사 이효진

[별지목록]

## 부동산의 표시

1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  호[도로명주소]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

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위 철골트러스지붕 17층 아파트

지하2층 72.9200㎡

지하1층 53.8320㎡

1층 588.0528㎡

2층 588.0528㎡

3층 내지 17층 582.4528㎡

(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)

1. 경기도 용인군  대 80828.6㎡

(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)

건물번호 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조 116.9760㎡

( 대지권의 표시 )

대지권 종류 1.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 80828.6분의 73.7086. 끝.

